

2020.12.21

이슈&리포트

이렇게 달라집니다.
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정리

이런 이유로 이슈&리포트 만들었습니다



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체크해보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.

바로 내년에 달라지는 노동법이 무엇이고 달라지는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일입니다.

더욱이 올 12.9에는 국회에서 10개에 달하는 대규모 노동관계법령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.

이번 <이슈&리포트>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을 정리해서 실무자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했습니다.

다만, 정리하다보니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12.9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및 근기법 관련 내용은 간략하게 개요정도로 요약했고 이후 <이슈&리포트>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이번 <이슈&리포트>는 김동미 노무사(노무법인 미담)가 제공해 주셨음을 밝힙니다.

» 한눈에 보는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①

구분	주요 변경내용	시행시기	취업규칙 반영 여부
근로기준법	주52시간제 전면 시행	2021.7.1	△
근로기준법	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화	2021.1.1	○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	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	2021.1.1	○
최저임금법	2021년 최저임금 시행 및 산입범위 확대	2021.1.1	△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	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	2020.12.8	○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	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노조 규약으로 결정 가능 등	공포 후 6개월	X
근로기준법	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	공포 후 3개월	△
고용보험법·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	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등	2021.7.1	X
산업재해보상보험법·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	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등	2021.7.1	X

» 한눈에 보는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②

☑ 주52시간제 전면 시행

-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'1주'의 개념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됨에 따라 1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연장, 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됨
- 개정사항은 2018.9.1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2021.7.1 부터는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 에도 확대 적용

☑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

- 2020.1.1.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, 지자체, 공기업에 시행되었고, 2021.1.1 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(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.1.1 적용예정)

☑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

- 허용 사유 확대 : 가족돌봄, 본인건강, 은퇴준비, 학업
-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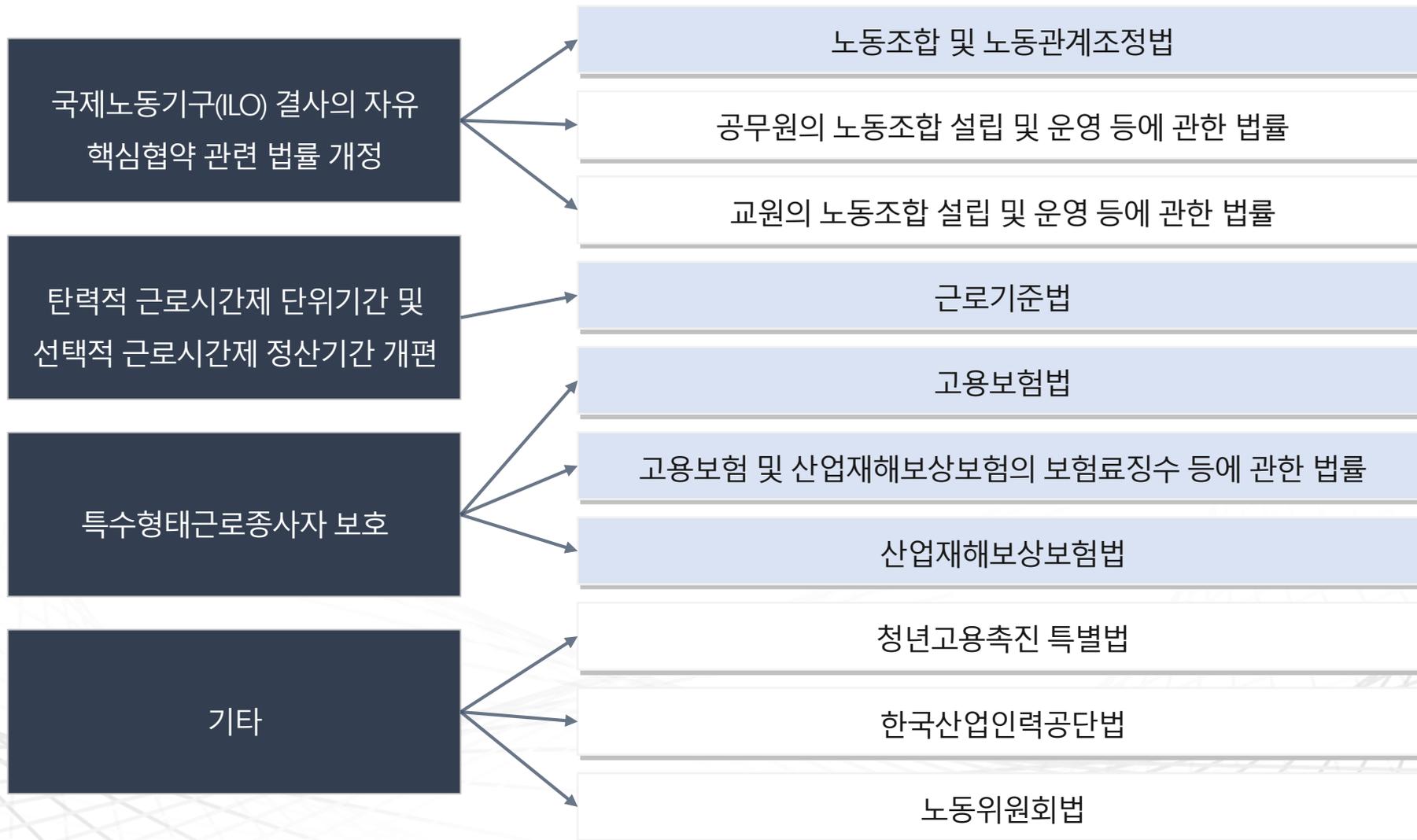
☑ 2021년 최저임금 시행 및 산입범위 확대

- 2021년 최저시급 : 8,720원 (2020년 대비 1.5% 인상)
- '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(8,720원)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(1,822,480원)의 각각 15%(상여금 약 273,372원)와 3%(복리후생비 약 54,674원)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(산입)

☑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

-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,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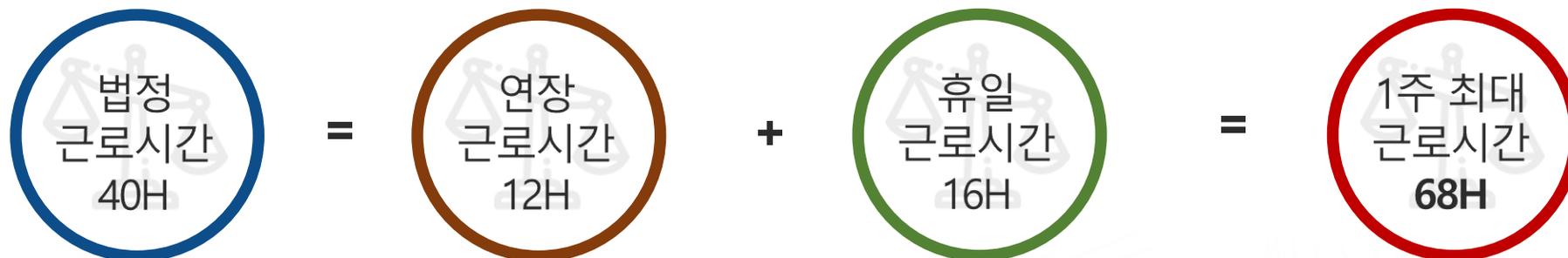
» 2020.12.9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개요



» 1. 주52시간제 전면 시행_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(시행: 2021.7.1)

5명 이상 ~ 49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(2021.7.1. 시행)

개정 전



개정 후



» 2.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화_30명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(2021.1.1)

2020.1.1.부터 단계적 시행, 30 ~ 299명 사업장 2021.1.1부터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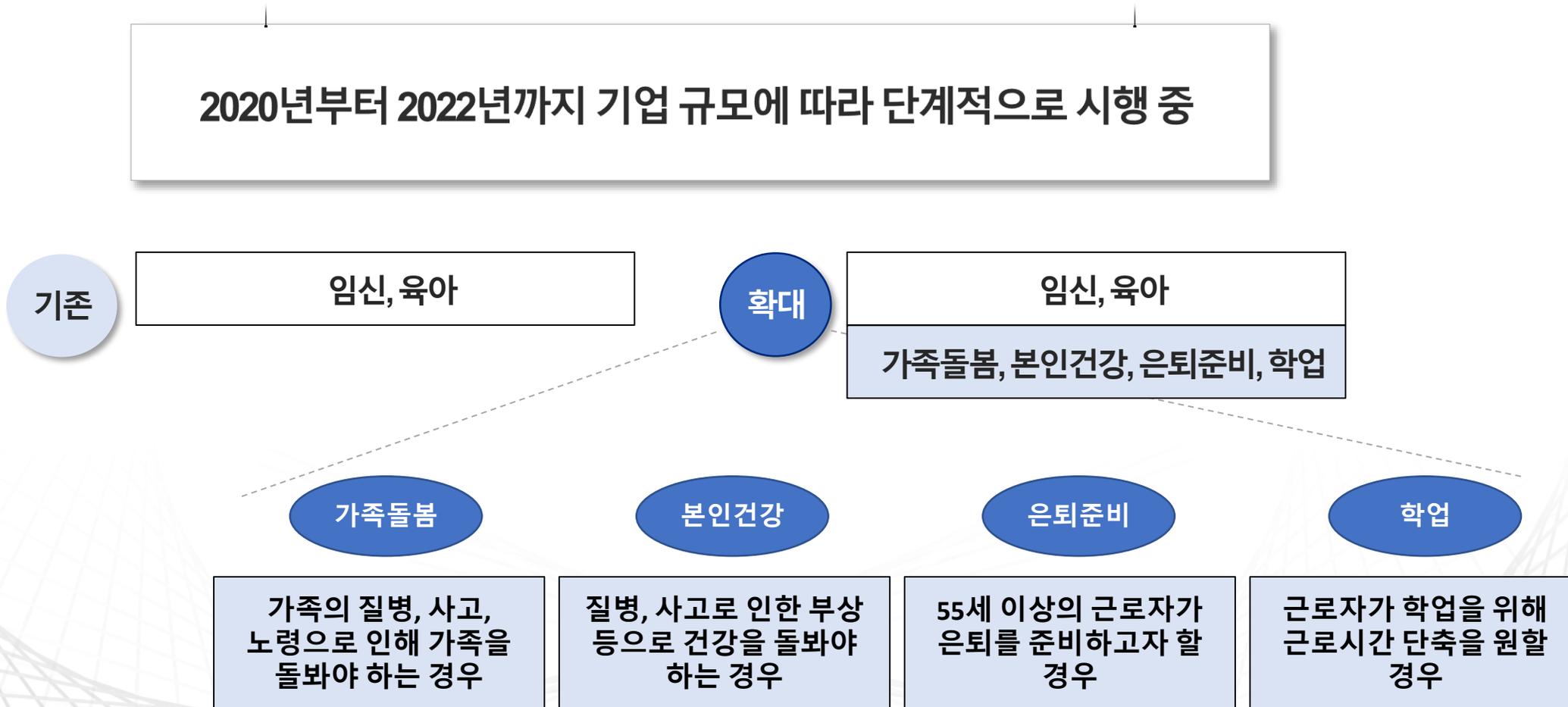
개정 전 법정 유급휴일

- ▶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
(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)
- ▶ 5월 1일 근로자의 날
(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름)

개정 후 법정 유급휴일

- ▶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
(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)
- ▶ 5월 1일 근로자의 날
(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름)
- ▶ **법정공휴일**
(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)
ex. 설날, 추석, 어린이날 등

» 3.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_30명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(2021.1.1)



“가족돌봄휴직 및 휴가공통사유”

» 4. 2021 최저임금 시행 및 산입범위 확대(2021.1.1)

2021년 최저시급 : 8,720원 (2020년 대비 1.5% 인상)

2021년 최저시급 월 환산액(월 209시간 기준) 은 1,822,480원 (2020년 1,795,310으로 27,170원 인상)

'19.1.1.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있음

해당 항목	2019년		2020년		2021년	
	산입 비율	월 환산액 기준 산입 금액	산입 비율	월 환산액 기준 산입 금액	산입 비율	월 환산액 기준 산입 금액
상여금	100분의 25	약 436,287원을 초과하는 금액	100분의 20	약 359,062원을 초과하는 금액	100분의 15	약 273,372원을 초과하는 금액
복리 후생비	100분의 7	약 122,160원을 초과하는 금액	100분의 5	약 89,765원을 초과하는 금액	100분의 3	약 54,674원을 초과하는 금액

» 5.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(2020.12.8)

공포일(2020.12.8.)부터 시행

-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,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
-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



HR의 성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

주 소 | 서울시 중구 다산로 11길 19, 백석빌딩 신관, 중앙경제
전 화 | 02-2231-7293
사 이 트 | www.elabor.co.kr

